

「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」 신구조문대비표

2020. 2. 24. 제정 판 (시행 2019. 11. 1.) → 2023. 4. 3. 개정 판 (시행 2023. 2. 1.)

바뀜 4 · 신설 0 · 삭제 0 · 번호 변경 0

공식 원본 law.syu.ac.kr · <https://suleap.syu.my/r/391/compare?from=940&to=1430> · 내려받은 때 2026. 10. 21. 오후 12:47:43 · 밑줄은 바뀐 부분

현 행	개 정 안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_언론 대응관리체계 구축_운영과 언론대응관리 활동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,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23-04-03>
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외협력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해당 부서장, 해당 학과장, <u>홍보팀장</u> 으로 구성한다.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협력처장이 되고, 서기는 <u>홍보팀장</u> 이 된다.	제2조(구성) ① 위원회의 구성은 대외국제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처장, 해당 부서장, 해당 학과장, <u>커뮤니케이션팀장</u> 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-04-03>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외국제처장이 되고, 서기는 <u>커뮤니케이션팀장</u> 이 된다. <개정 2023-04-03>
제7조(자료 제공)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관리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.	제7조(자료 제공) 위기 상황 발생시 해당 부서와 학과는 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 위원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신속히 정리하여 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. <개정 2023-04-03>
제8조(주관 부서)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협력처 <u>홍보팀</u> 으로 한다.	제8조(주관 부서) 본 위원회의 주관 부서는 대외국제처 <u>커뮤니케이션팀</u> 으로 한다. <개정 2023-04-03>

개정문 (참고본)

원본(law.syu.ac.kr)에 개정문이 없어, 직전 판과의 신구 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.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.

「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 규정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본 규정은 삼육대학교의 대언론 위기 대응과 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의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고,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통하여 경영목표 달성 및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주요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중 "대외협력처장"을 "대외국제처장"으로 하고, "홍보팀장으로 구성한다."를 "커뮤니케이션팀장으로 구성한다. <개정 2023-04-03>"로 한다.

제2조제2항 중 "대외협력처장이"를 "대외국제처장이"로 하고, "홍보팀장이 된다."를 "커뮤니케이션팀장이 된다."로 한다.

제7조 중 "언론대응관리위원회가"를 "언론대응커뮤니케이션위원회가"로 한다.

제8조 중 "대외협력처 홍보팀으로 한다."를 "대외국제처 커뮤니케이션팀으로 한다."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